

재무제표사기의 발생, 예방 및 적발에 관한 연구

—심리적 변수 및 조세적 고려를 포함하여—

이 준 봉

(변호사)

【초 록】

재무제표사기는 ‘Cooks’, ‘Recipes’, ‘Incentives’, ‘Monitoring’ 및 ‘End Results’라고 하는 상호 작용하는 5요소들의 조합에 의하여 분석될 수 있다. 위 5요소들은 ‘CRIME’으로 축약된다.

재무제표사기는 동기(Incentives)변수, 기회(Opportunities)변수 및 합리화(Rationalization)변수들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고, 위 3변수들은 조건(Conditions)변수, 회사구조(Corporate Structure)변수 및 결단(Choice)변수들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전략들은 다음과 같다: fraud vulnerability reviews, gamesmanship review, fraud prevention program 및 enforcement procedures. 재무제표사기를 예방 및 적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은 위 4전략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사이의 차이 및 법인세유연화에 관한 실증적 조세연구들에 근거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제어: 재무제표사기 / 동기 / 기회 / 합리화 / 조건 / 구조 / 결단 / 발생모델 / 조세적 고려 / 회계이익 / 과세소득 / 법인세유연화(평준화)

【차 례】

I. 서 론

II. 재무제표사기의 발생모델

1. 재무제표사기의 정의 및 분석 방법
2. 재무제표사기의 발생모델

III.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전략들

1.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전략들
2. 각 전략에 따른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방안들의 분류

IV. 새로운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전략으로서의 ‘조세적 고려’

1. 재무 및 세무보고의 관련성
2. 세무조사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의 차이
3. 조세적 고려를 이용한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전략

V. 결 론

I. 서 론

회계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재무제표사기의 발생을 예방하고 적발하려는 수많은 대책들이 수립되고 있다. 그 대책들은 주로 그 동안 회계투명성을 자랑하여 왔던 미국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많은 회계부정을 겪으면서 미국에서 수립되는 각종 대책들을 도입하고 있다.

수많은 재무제표사기의 발생에 대한 예방 및 적발방안을 어떠한 틀로 정리하여야 할 것인가? 위 각 대책들이 어떠한 경로로 재무제표사기를 예방 및 적발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사기의 발생모델을 알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전략들을 재무제표사기의 발생모델과 연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최근에 입법화되거나 논의중에 있는 일부의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방안들을 그 전략의 관점에서 분류하여 보기로 한다. 이에 더하여 조세적 고려를 이용한 새로운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전략을 모색하여 본 후, 위 재무제표사기의 발생모델과 그 예방 및 적발전략이 실증적 분석 및 정책적 관점에서 가질 수 있는 시사점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재무제표사기의 발생모델

1. 재무제표사기의 정의 및 분석방법

(1) 분식회계(window dressing) 또는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에 관하여서는 실증적 연구결과들이 꾸준히 축적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그 용어에 관한 정의는 비교적 불분명한 상태인 듯하다. 이익조정에 관한 정의가 연구자들마다 상당히 다른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

Schipper(1989)¹⁾는 이익조정을 “어떠한 사적인 이득을 얻을 의도를 가지고 외부에 재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Schipper는 이익조정을 GAAP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Healy와 Walen(1999)²⁾은 이익조정을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하여 투자자나 채권자를 오도하거나 회계수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계약관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경영자가 재무보고나 회계처리과정에 개입하여 공시되는 재무정보를 변경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이익조정 목적의 투하자나 채권자를 오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추가한 정의라고 할 것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익조작(Earnings Manipulation)이라는 용어와 이익조정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서 사용하기도 하나, 구분하는 경우에는 이익조작은 GAAP을 벗어나서 이익조정을 하는 것을 뜻한다. 본고 역시 GAAP을 벗어나서 이익조정을 하는 경우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익조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기존의 이익조정 또는 이익조작의 정의에는 아래의 점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첫째, 이익조작 등의 정의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왜곡표시의 ‘중요성’개념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중요성개념을 도입하고 이익조정의 목적인 ‘투자자나 채권자를 오도하는 것’ 역시 반영하고 있는 정의가 증권거래법 및 회계감사의 영역 등에서 보다 유용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 증권거래법 제186조에도 역시 위 중요성개념이 수용되어 있다. 이는 회계감사기준에 있어서도 같다.

둘째, 최근 국내외의 회계스캔들과 관련하여 분식회계 또는 이익조정 등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보다 명확하여지고 있으므로 그 범죄적 성격을 나타낼 필요가 크다.

위 이익조작의 정의 외에 이상의 각 점을 반영하여 ‘재무제표사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예가 있는바, Zabihollah Rezaee의 정의가 이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Zabihollah Rezaee의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3) 즉 “재무제표사기”(financial statement fraud)를 “회사들이 중요하게 왜곡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배포하여 공표된 재무제표의 이용자들(특히 투자자와 채권자들)을 기망 또는 오도하는 의도적 시도”라고 정의한다.

(2) Rezaee에 의하면, 재무제표사기는 Cooks, Recipes, Incentives, Monitoring 및 End results라는 다섯 가지의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에 의하여 분석될 수 있다고 한다.4) Cooks는 재무제표사기의 주도층에 관한 요소이고, Recipes는 재무제표사기를 행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Incentives는 재무제표사기를 행하려는 심리적 유인들을 설명하며, Monitoring은 재무제표사기를 행한 회사들의 속성에 관한 환경변수를 지칭하는 것이다. End results는 재무제표사기가 적발될 경우의 심각한 효과를 설명하는 요소이다. 위 다섯 가지 요소들의 첫자를 축약하여 ‘CRIME’으로 부를 수 있다. 이하 위 요소들을 차례로 살펴본다.

COOKS

COSO보고서(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ssion, 1999)에 의하면 재무제표사기에 연루된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최고경영진에 의하여 재무제표사기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CEO는 72% 정도 위 사기건수에 관여되었고, CFO는 63% 정도 관여되었으며, Controller는 21% 이상이라고 한다.

RECIPES

COSO보고서(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ssion, 1999)에 의하면 재무제표사기의 90% 정도는 재무정보의 조정, 변경과 위조(falsification)에 관계되어 있으며 약10% 정도만이 자산의 유용(misappropriation)에 관계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위 보고서에 의하면 위 사기사건의 50% 이상이 수익을 조기에 인식하거나 허위로 인식하는 방법을 통하여 수익을 과대계상하였다고 한다.

Bonner, Palmrose와 Young(1998)은 재무제표사기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5)

- ① 수익 또는 관계자산의 허위계상 또는/그리고 과대계상
- ② 수익의 조기인식
- ③ 수익 또는 자산의 오분류(Misclassified Revenues and Assets)
- ④ 가공자산 또는/그리고 비용/부채의 감소
- ⑤ 자산의 과대평가 또는 비용/부채의 과소평가
- ⑥ 부채의 생략
- ⑦ 생략되거나 부적절한 공시
- ⑧ 자본관련 사기(Equity frauds)
- ⑨ 관계당사자 사이의 거래
- ⑩ 역방향의 재무제표사기(Financial Frauds Going the “Wrong Directions”)

위 각 유형 중 역방향의 재무제표사기(Financial Frauds Going the “Wrong Directions”)는 다른 유형의 재무제표사기와 달리 세금상의 목적이나 적대적 M&A에 대한 우려 등의 이유로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수익과 자산을 과소평가하거나/하고 비용과 부채를 과대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위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 ① 손실보전 목적의 준비금(rainy day reserves)을 적립하여 그 이익을 줄인다.
- ② 수익인식을 이후 계속되는 회계기간으로 미룬다.

- ③ 고정자산을 비용으로 기록한다.
- ④ 자본적 지출을 부적정하거나 불충분하게 기록한다.
- ⑤ 부채를 과대계상한다.
- ⑥ 대손상각비를 과대계상한다.
- ⑦ 감가상각, 무형자산의 상각 및 자산의 writeoffs를 과대계상한다.

채무제표의 분식은 기본적으로 부실자산 또는 가공자산의 과대계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부외부채의 방식으로 분식을 하였을 경우 나중에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적발되었을 때 횡령 등의 문제로 처벌당할 수 있으며, 또 차기 이후에 회사가 정상화되는 경우에도 미계상된 부채의 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부실규모가 커지게 되어 채무제표 내에 그러한 부실을 은폐시킬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부외부채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도 처음에는 부실자산과 가공자산을 먼저 계상하고 이 자산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회사가 더욱 부실하게 되어 더 이상 그러한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나 회사의 규모가 작아서 이러한 회계처리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에는 부외부채로 처리하게 된다. 이 경우 부외부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표이사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고 이와 부외부채를 상계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INCENTIVES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채무제표사기의 동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고 한다.6)

회사의 목표 및 목적을 충족시키고, 자금조달관련계약을 이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새로운 자금조달을 받거나 기존 자금조달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과관련 보수를 받는다거나 주식의 매매를 통한 투자를 유인하려고 할 뿐 아니라 시장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려고 하는 것 역시 채무제표사기의 유인들이 될 수 있다. 비현실적으로 증가된 주당순이익을 공시하려는 동기도 있을 수 있다.

사기적 재무보고에 관한 COSO 보고서(1999)에 의하면 채무제표사기에 관한 동기들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고 한다.7)

- ① 세전 손실을 보고하는 것을 피하고, 재무적 성과를 과장한다.
- ② 증권분석가들의 이익의 성장치에 관한 예측을 충족시키거나 초과달성한다.
- ③ 주가를 높이고, 신주발행에 대한 수요를 창조한다.
- ④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지위를 얻거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 ⑤ 자산을 사적 용도로 유용한 사실을 숨긴다.

MONITORING

회사가 윤리적이거나 구조적으로 GAAP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또는 사기적 재무보고활동을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는 책임있고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가 없을 경우에 채무제표사기에 관여할 기회가 증가하며, 그 예는 아래와 같다고 한다.8)

- ① 이사회 그리고/또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주의깊은 감시의 결여
- ② 불충분하고 비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
- ③ 내부감사기능의 부존재 그리고/또는 비효과적인 내부감사기능
- ④ 상당한 주의를 다하는 외부감사의 부존재

⑤ 비정상적 또는 복잡한 거래

⑥ 경영자에 의한 중요한 재량이 필요하거나 주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재무적 추정치

END RESULTS

사기적 재무보고에 관한 COSO 보고서(1999)에 의하면, 재무제표사기와 관련한 심각한 결과는 이렇다: 재무제표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들 중 36%는 파산신청을 하였고, 15%는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으며, 21%는 상장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58%는 주가의 증대한 하락을 겪었다. 또한 분식회계에 관여한 최고경영진은 개인적으로 ① 주가연동보상액을 상실하고, ② 사직하거나 해고되었으며(최고경영진의 약 30%), ③ SEC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거나 상장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④ 벌금 또는 징역 등에 처하여졌다. 외부감사인들 역시 개업이 금지되거나 civil fines를 받았다.9)

위와 같이 재무제표사기에 대한 결과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사기가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재무제표사기에 대한 동기가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위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들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은 동기, 기회 및 합리화 근거가 적절하게 조합되어 있으면 재무제표사기에 관여할 수 있다.10)

(3) Cooks, Recipes, Incentives, Monitoring 및 End results라는 다섯 가지의 상호작용하는 요소를 시간적 순서에 의하여 구성하여 보자. 회사의 최고경영자 등(Cooks)이 각 회사가 처한 특정한 환경(Monitoring)하에서 재무제표사기를 행하려는 심리적 상태(Incentives) 등을 갖게 되어서 여러 가지의 방법(Recipes)을 이용하여 재무제표사기를 행한 후 이것이 적발될 경우에 심각한 불이익(End Results)을 받게 되는 것이 통상의 순서일 것이다.

Cooks는 재무제표사기의 주도층에 관한 것이고, End Results는 재무제표사기의 발생 후의 사건이므로 재무제표사기의 발생과정에 관여하는 주 요소는 Monitoring, Incentives 및 Recipes 등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모든 재무제표사기가 적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에 편승한 의사결정을 막기 위하여 위 End results의 수준이 위 심리적 상태의 발생에 대한 억지책의 하나로서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위 변수들 중 특정한 환경 및 심리적 상태와 관련한 변수들을 각 Monitoring 및 Incentives 하나뿐이라고 하지 않고, 이들을 보다 세분하여 재무제표사기의 발생모델에 사용하기로 한다.

2. 재무제표사기의 발생모델

(1) 재무제표사기에 관한 발생모델의 필요성 등

재무제표사기의 발생모델은 재무제표사기에 대한 원인들 및 각 원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재무제표사기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발생모델이 없다면 재무제표사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각 사건을 분석하여 그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대증적으로 제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각 대책이 중복되기 쉬울 것이고 그 원인의 파악 역시 훨씬 어려울 것이다. 또한 발생모델이 없을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재무제표사기의 발생에 관련하여 원인 및 그 대책이 다양할 수밖에 없음에도 외국의 제도를 수용하는 과정에 적용할 판단기준을 세우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잠재적인 재무제표사기의 발생가능성에 예방적 대책을 수립하는 것 역시 보다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재무제표사기의 원인 또는 조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로 과거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바 이러한 연구방법은 이미 시행된 정책에 대한 효과나 기왕에 발생한 재무제표사기의 원인 또는 조건을 밝히는 차원에서는 유용할 것이나 여러 대책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서는 사용하기 어려우며 연구시점 현재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한편, 재무제표사기는 회사들이 중요하게 왜곡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배포하여 공표된 재무제표의 이용자들(특히 투자자와 채권자들)을 기망 또는 오도하는 의도적 시도라고 할 것이므로, 각 회사들이 처한 객관적인 상황 또는 조건들과 재무제표사기의 발생 사이에 이를 매개하는 심리적 변수들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또한 위 심리적 변수들은 보다 자세하게 유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심리적 변수들이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모델이 세워진다면,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을 경우 그 모델상의 경로계수의 변화를 통하여 정책의 효과를 알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며, 조사 당시의 자료를 취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조사 또는 연구대상 고유의 경로계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각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미 알려진 재무제표사기에 관계된 환경변수들 및 매개변수인 다양한 심리적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 재무제표사기에 관한 발생모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3Cs모델¹¹⁾ 등을 이용한 재무제표사기의 발생모델의 설정

위 Monitoring에 관계된 환경변수들을 Conditions, Corporate Structure 및 Choice로 유형화시켜서 재무제표사기의 발생을 설명하는 모델을 3Cs모델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 3Cs변수들에 의하여 바로 재무제표사기의 발생을 설명하지 않고,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재무제표사기에 대한 심리적 변수들을 동기(Incentives), 기회(Opportunity) 및 합리화(Rationalization)로 유형화시키고 위 3Cs변수들이 위 심리적 변수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재무제표사기의 발생모델을 세우기로 한다. 즉 심리적 변수인 동기(Incentives), 기회(Opportunity) 및 합리화(Rationalization)들에 의하여 재무제표사기를 설명하고 위 심리적 변수들을 다시 Conditions, Corporate Structure 및 Choice변수들이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 3Cs들은 환경변수들을 유형화시키는 변수들이나, 각 변수들이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서로 공통되는 부분 역시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위 발생모델을 토대로 하여 잠재적인 재무제표사기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적발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 또는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미국의 SAS No.99(Consideration of Fraud in a Financial Statement Audit)¹²⁾와 유사한 것이다.

1) Conditions

환경변수들(environmental variables)은 회사가 처한 일반적인 상황을 이르는 것이나 경제적 요인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며 지속적인 이익을 보장하려 하거나 성과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과 증권분석가들의 이익예측치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재무제표사기와 관련하여 그 비용/효익의 trade-off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사기를 행하는 합리화근거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한 재무제표의 발생가능성을 높여주는 동기변수 및 기회변수에도 역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재무제표사기를 범하고자 하는 동인(impetus)을 설명할 수 있는 조건들은 주로

다음과 같다.

- *중요한 관계당사자들 사이의 거래의 존재
- *불충분하고 비효과적인 내부감사기능
- *외부감사인의 잦은 교체와 미숙한 외부감사인의 선임
- *신용획득의 실패(Inability to obtain credit)
- *우호적이지 못한 경제적 조건들
- *보고된 이익의 성장치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현금흐름
- *제한적인 여신약정들
- *매출채권의 회수를 하지 못하여 생긴 과도한 대손상각비
- *과도한 투자 그리고/또는 손실
- *몇몇 고객에 대한 의존성

2) Corporate Structure

이는 재무제표사기를 예방하고 적발하기에 부적절한 회사 지배구조의 특성 또는 속성에 관한 것이다. 이에는 공격성(aggresiveness), 응집성(cohesiveness), 충성심(loyalty), 기회주의(opportunism), 신뢰(trust), 지배의 효과성(control effectiveness) 등이 있다고 한다.

공격성과 기회주의는 회사의 증권분석가들의 분기 또는 연간 주당순이익에 관한 예측치를 만족시키려는 태도와 동기 및 부당하게 유리한 재무적 성과를 보고하여 월가를 만족시키려는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응집성과 충성심은 내부고발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은닉할 확률을 증가시키는 환경을 만들어낸다.

신뢰와 지배의 비효과성은 감시기능(예: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과 감사기능(예: 내부감사인,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사기를 적발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

응집성은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명백하게 한정된 그룹의 경계선을 만들어서 재무제표사기를 감추기 위하여 강하게 협력하고 그 외의 자들에게 사기적 재무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다 큰 제한을 부과한다.

3) Choices

경영진은 불법적인 이익조정에 관여하는 지름길적인 대안과 이익의 질 및 양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윤리적인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량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환경적 압력이나 회사구조가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재무제표사기는 어느 경영자의 공격성, 도덕적 기준의 부재, 또는 과도된 창조(혁신)성에 의하여 동기부여된 전략적 수단 또는 재량행위들(discretions)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무제표사기의 발생은 환경적 압력 또는 회사구조와 무관한 결단의 문제일 수도 있다.

4) 동기(Incentives)

위 CRIME 중 하나로서 기술하였는바, 각 동기는 대략 아래와 같은 심리적 상태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쫓회사의 목표 및 목적을 충족시킨다.

쫓자금조달관련 계약을 이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쫓성과관련 보수를 받는다.

쫓새로운 자금조달을 받거나 기존 자금조달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는다.

쫓주식의 매매를 통한 투자를 유인한다.

쪼비현실적으로 증가된 주당순이익을 공시한다.

쪼시장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킨다.

5) 기회(Opportunity)

이는 재무제표사기를 주도하는 층들이 이익을 조작하려고 결심만 하면 회사 내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각 회사들이 발표하는 이익이 각 회사에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확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및 각 회사 내의 회계처리방법 및 정책 등은 상황에 따라서 변경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등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합리화(Rationalization)

각 기업들에 있어서 주주들의 이익을 증가 또는 보호하는 것이라면 이익조작 등 재무제표사기를 통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심리상태 및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면서도 주주의 이익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믿는 심리적 상태를 뜻한다.

7) 변수들 사이의 경로설정

재무제표사기에 관련한 위 조건들(Conditions), 회사구조(Corporate Structure) 및 결단(Choice)은 각각 기능할 수도 있으나 아마도 많은 경우 서로 조합이 되어서 재무제표사기 발생의 동인이 되는 ‘기회’, ‘동기’ 및 ‘합리화’에 영향을 미쳐서 재무제표사기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¹³⁾

위와 같이 3Cs들에 의하여 ‘동기’(Motive), ‘기회’(Opportunity) 및 ‘합리화’(Rationalization)들의 적절한 조합이 있게 되면, 재무제표사기에 대한 가능한 모든 부정적인 결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망과 불법적인 행위들이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는 한 회사들은 재무제표사기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¹⁴⁾

위 조건들(Conditions), 회사구조(Corporate Structure) 및 결단(Choice)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위 3Cs들이 심리적 변수인 ‘동기’(Motive), ‘기회’(Opportunity) 및 ‘합리화’(Rationalization)에 어떠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위 ‘동기’(Motive), ‘기회’(Opportunity) 및 ‘합리화’(Rationalization)들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위 3Cs들과 심리적 변수들 사이의 연결고리는 재무제표사기의 주도층이 CEO를 포함한 회사의 최고경영진들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탐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무제표사기와 관련한 최고경영진의 특성 등에 관한 변수가 결단(Choices)변수이고, 위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위 심리적 변수들은 결국 최고경영진의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 3Cs들 중 심리적 변수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변수는 결단변수일 것이다. 또한 결단변수가 조건변수 및 구조변수와 무관할 여지 역시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건변수가 결단변수에 직접 또는 구조변수를 통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즉 환경변수인 조건변수가 직접 최고경영진의 결단변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사기를 예방하고 적발하기에 부적절한 회사지배구조의 특성 또는 속성을 의미하는 구조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위 구조변수는 결단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최고경영진들의 결단변수가 환경변수인 조건변수를 변화시킨다고 상정하는 것이 어색하게 보이며, 회사의 최고경영진들이 결단을 한 후에 회사지배구조의 특성 등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재무제표사기를 행한다고 설명하기보다는 회사지배구조의 특성 등에 최고경영진들이 영향을 받아서 재무제표사기에 대한 결단을 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사리에 부합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 심리적 변수들 중 동기변수의 내용은 대부분이 회사 내에 자연발생적으로 존재하는 심리적 상태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동기의 발생 자체가 아니라 동기의 수준이 위 3Cs들(주로 결단변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동기의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동기 자체는 위 3Cs들과 독립적으로 발생하며 단지 그 수준이 위 3Cs들(주로 결단변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한다. 최고경영진들이 특정한 동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재무제표사기를 행하기보다는 그 재무제표사기행위가 가능할 것인지 및 그것이 주주의 이익에 도우며 되는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동기변수의 수준이 기회변수 및 합리화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위 동기, 기회 및 합리화변수들이 재무제표사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서는 위 조건, 구조 및 결단변수들이 직접 재무제표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와 위 결단변수 외에 조건 및 구조변수 역시 동기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들을 같이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위와 같은 경로들에 대한 가정의 타당성은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수정될 여지 역시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III.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전략들

1.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전략들¹⁵⁾

(1) Fraud Vulnerability Reviews

Fraud Vulnerability Review는 주기적이고도 계속하여서 수행하여야 하고 회사들은 fraud hotlines를 개설하여야 하며 적절한 whistle-blowing policy와 forensic accounting 기법들을 사용하여야 한다.

위 전략은 재무제표사기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기에 보다 쉽게 발견하여 이를 제거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재무제표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징후를 발견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사가 처한 내부 및 외부의 조건을 개선시키는 것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2) Gamesmanship Review

Gamesmanship Review에 의하면 최고경영진의 철학, 태도, 업무스타일, 의사결정, 행동들, 신념들 및 윤리적 가치들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경영진이 재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의 증권분석가, 내부감사인, 외부감사인,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Fraud Prevention Program

회사들은 사기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절한 정책 및 절차를 확립하여야 하며, 위 정책과 절차를 회사의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이를 따르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그 효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위 프로그램은 forensic accountants와 내부감사인, investigators, 변호사들 및 인사부 직원들(human resources personnel)로 구성된 그룹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위 그룹은 주기적으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위 프로그램의 정확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Enforcement Procedures

규제기관들에 의한 enforcement procedure들과 함께 내부적으로 분식회계에 대하여 fraud enforcement procedure를 개발하고 심각할 정도의 벌칙을 두어야 한다.

위 각 전략들은 회사입장에서 재무제표사기를 예방 및 적발하기 위하여 세워야 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규제기관 등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 각 전략들 중 Fraud Vulnerability Reviews는 위 3Cs요인 중 주로 Condition을 개선하는 점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보이며, Gamesmanship Review은 최고경영진의 위 Choice와 관련된 요소를 감시하겠다는 취지의 전략이며, Fraud Prevention Program은 위 Corporate Structure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일 것이다.

Enforcement Procedures는 재무제표사기에 대한 회사 내부 및 외부에서의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즉 위 CRIME요소 중 End results를 강화하여 재무제표사기발생모델 중 심리적 변수들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재무제표사기를 예방하자는 전략일 것이다.

이상의 각 전략들과 위 발생모델의 변수들 사이의 연관관계는 조사 또는 연구대상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같은 전략이라도 서로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확정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2. 각 전략에 따른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방안들의 분류

(1) Fraud Vulnerability Reviews에 따른 방안들

-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 기재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표이사 등의 확인 및 서명의 의무화
- *공시서류의 허위 기재 및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인지하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감사보고서에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 기재 등에 대한 배상책임 대상으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의 포함
-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 및 재무전문가가 1인 이상 감사위원으로 포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가 당해 회사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및 주요주주에 대한 금전대여 등의 원칙적 금지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함
- *외부감사대상인 회사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회계정보의 검증방법, 회계관련 임·직원의 업무분장 등을 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도록 하고, 감사인은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등을 검토하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동일 감사인으로부터 6년 연속 감사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회계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
-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8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조서의 위조, 변조 등을 금지
- *금융기관 중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8,000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을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이상인 회계법인 중 증권선물위원회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외국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에 한정
- *불공정 증권거래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한 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불이익 대우를 금지하며,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외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16)
- *감사인의 독립성의 제고(Regulation S-X)
- *재무제표사기의 징후들(red flags)의 목차를 개발하여 활용(17)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도입
- *임원의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되, 기재사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회계감사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Gamesmanship Review에 따른 방안들

*최고경영진의 철학, 태도, 업무스타일, 의사결정, 행동들, 신념들 및 윤리적 가치들을 포괄적으로 평가

*최고경영진이 재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의 증권분석가, 내부감사인, 외부감사인,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검토

*감사인의 독립성의 제고(Regulation S-X)

*선택적 공시의 예방(Regulation FD)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 및 재무전문가가 1인 이상 감사위원으로 포함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동일 감사인으로부터 6년 연속 감사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3) Fraud Prevention Program에 따른 방안들

*사기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절한 정책 및 절차를 확립

*사기예방 정책과 절차를 회사의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이를 따르도록 함

*독립성이 확보된 인사들로 구성되는 그룹에 의한 주기적인 사기예방 정책과 절차에 대한 효과를 점검하고, 이에 대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

(4) Enforcement Procedures에 따른 방안들

*재무제표사기에 관여한 자의 형사처벌, 징계 및 자격정지 등 처분을 엄하게 조정

*불공정거래행위에 관여한 증권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위 각 전략들은 재무제표사기의 발생모델 중 주로 일정한 과정에 작용할 것으로 의도되었을 것이나, 재무제표사기를 예방 및 적발하기 위한 각 방안들은 여러 가지의 전략에 동시에 작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 각 분류는 절대적일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위 방안들이 망라적인 것은 아니다.

위 각 전략들은 각 방안을 수립할 당시 고려하여야 될 관점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 각 방안들 중 fraud vulnerability reviews에 따른 방안들, gamesmanship review에 따른 방안들 및 fraud prevention program에 따른 방안들은 위 3Cs변수들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유형화하고, enforcement procedures에 따른 방안들은 위 각 심리적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IV. 새로운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전략으로서의 '조세적 고려'

1. 재무 및 세무보고의 관련성

(1)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관하여

시장에는 이익을 과대계상하려고 하는 다른 유형의 재무제표사기와 달리 세금상의 목적이나 적대적 M&A에 대한 우려 등의 이유로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수익과 자산을 과소평가하거나 /하고 비용과 부채를 과대평가하는 역방향의 재무제표사기(Financial Frauds Going the "Wrong Directions")가 존재한다. 기업의 경영자들에게는 자본시장압력이 클수록 재량적 발생액 등을 이용하여 회계이익을 높이려고 하나 회계이익이 증가되면 일반적으로 과세소득도

증가하여 법인세추가부담이 수반되므로 재무보고와 세무보고 목적상의 상충관계에 직면하게 되고, 이 경우 경영자들은 회계이익은 높게 보고하고 과세소득은 낮게 보고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다.18)

Clody 등(1996)의 설문지 조사결과에 의하면 상장기업의 경영자가 재무회계 결정과 세무보고에 대하여 내리는 결정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첫째, 세무와 재무회계 결정을 동시에 고려(49.0%), 둘째, 세무와 재무회계 결정을 각 독립적으로 결정(29.2%), 셋째, 재무회계 결정을 한 후 세무회계 결정(19.6%), 넷째, 세무회계 결정을 한 후 재무회계 결정(2.2%)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9)

Mills and Sansing(200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20) 특정거래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보다 가져오는 경우에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능성은 더 크며, 그러나 일단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여부는 세무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박종일과 김경호(2002)에 의하면21) 첫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재량적 발생 또는 재량적 유동발생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고, 둘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조세혜택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으며, 셋째, 통합 회귀분석 결과에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상호작용변수(재량적 발생/재량적 유동발생/조세혜택)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넷째,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수출비중이 클수록,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일수록, 준비금과 적립금 또는 준비금과 적립금의 변동이 클수록 그리고 유동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자는 과세소득에 비하여 회계이익을 증가시켜 보고할 유인이 크다고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조세적 고려를 이용한 역방향의 재무제표사기는 이익증가방향의 재무제표사기와 동시에 또는 종합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시장에 존재하는 조세적 고려를 이용한 역방향의 재무제표사기는 이익증가방향의 재무제표사기와 별도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보고와 세무보고 목적상의 상충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익증가방향의 재무제표사기와 함께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 재무제표사기의 존재를 바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큰 경우는 재무제표사기에 대한 유력한 징표가 될 수 있으며, 위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수출비중이 클수록,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일수록, 준비금과 적립금 또는 준비금과 적립금의 변동이 클수록 그리고 유동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자는 과세소득에 비하여 회계이익을 증가시켜 보고할 유인이 크다는 연구결과에 따라서 이들 요인을 종합한 지표를 보조적인 징표로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법인세평준화에 관하여

법인세평준화는 제도적으로 허용된 수단을 이용하여 법인세의 변동성을 자신의 기대수준으로 감소시키려는 경영자의 행위라고 정의되고 있다.22) 또한 법인세평준화는 협의로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조세감면혜택을 법정 한도까지 완전하게 활용하지 아니하거나 세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무조정항목을 임의 조정하여 법인세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을 말하나 광의로는 법인세평준화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이익조정까지를 포함하여 정의된다.23)

1) 실증적 연구결과들

윤종규(1999)24)에 의하면, 법인세평준화와 관련한 외국의 선행연구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며, 기업의 목표는 조세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세감면 등을 최대한 활용하

여 법인세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기업이 법령에서 주어진 조세감면혜택을 포기하거나 연기하여 법인세를 평준화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세와 관련한 이익조정 선형연구들은 주로 이러한 법인세최소화 동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예상과는 달리 이익조정이 법인세유연화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한편 법인세의 직접감면, 간접감면 및 기타 세무조정 사항이 법인세평준화의 수단변수로서 평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은 전년도 법인세 수준을 의식하고 있고, 장·단기적으로 평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세평준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되는 수단변수를 검증한 결과 직접감면의 결과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이 평준화의 정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⁵⁾

전춘옥 등(1996)은 상장기업들이 조세감면규제법(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간접감면규정인 특별상각과 준비금 등 간접 조세감면규정을 활용하여 법인세유연화를 실시하고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표본으로 1984년부터 1993년까지 166개를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그 검증결과에 의하면 경영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상각이나 준비금을 이용하여 법인세유연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익유연화와 법인세유연화는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법인세유연화 현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언(1997)²⁶⁾에 의하면 선형연구의 법인세평준화 비율보다는 낮은 법인세평준화 비율이 나타났으며, 총자산을 기업규모의 변수로 이용한 법인세평준화 비율의 차이분석에서 대규모기업과 소규모기업의 평준화 비율은 크게 나타났으며 중규모기업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윤종규(199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들은 임시특별세액감면이 다른 감면수단과 중복하여 수혜받는 것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는 대신 급격한 조세부담 감소를 줄이기 위하여 준비금 등 간접감면의 수혜를 줄여 조세감면세액을 과거연도와 평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감면수혜의 축소현상은 이익수준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낮을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조세감면 의사결정에 있어 법인세평준화 동기가 매우 강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을 과거연도 수준으로 평준화하려는 경향은 부채비율,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나타나 이들 변수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익조정에 대한 검증은 표본기업이 비교대상연도의 전기 이익수준과 발생조정액 조정전의 영업현금흐름의 상황에 따라 이익수준을 상향조정하거나 하향조정하여 법인세를 평준화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영업현금흐름이 비교대상연도의 이익수준에 비하여 낮은 표본기업은 법인세평준화를 위하여 이익수준의 상향조정까지도 불사함을 보여주는 결과는 그 정책적 함축성이 음미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부채비율, 기업규모 등의 변수는 이익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실증분석 결과 발견된 이익조정현상이 법인세평준화 동기임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평준화의 수단은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조정하는 방안과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으며, 후자인 협의의 법인세유연화는 특별상각과 준비금 등의 간접감면을 활용하는 방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의 직접감면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간접감면 이외의 세무조정항목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고,²⁷⁾ 위 협의의 법인세유연화만으로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을 조정하여 법인세 부담을 조정하는 법인세유연화 동기에서의 이익

조정이 법인세유연화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들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법인세유연화 목적 이외의 이익조정 동기 등 복합요인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유연화 수단은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되고 그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28)

또한 법인세와 관련한 이익조정방법으로는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발생조정액 (accruals)을 이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고, 대체적 회계처리방법 대신 발생조정액이 이익조정을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이유로는 우선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을 이용한 이익관리는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관찰되기 쉽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29)

2) 법인세평준화 및 재무제표사기 사이의 관련성

우리나라에서는 조세당국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과세표준을 수입금액으로 나눈 과세표준율을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경영자는 특별한 경기변동이 없는 한 과세표준율을 전년도와 같이 유지하려고 하여 결산시 당기순이익이 낮아 과세표준율이 과거연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하락되면 비록 기업회계상의 오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세당국의 주의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이익을 조정할 수 있고 또한 결산시 과세표준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고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조세를 이연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30)

만약 기업들이 아무런 세무회계상의 오류 및 기업회계기준 위반행위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를 평준화시킬 것인가? 이를 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기존에 행한 세무회계상 또는 다른 기업회계기준 위반 등이 있기에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지 않기 위하여 현금유출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시적으로 법인세를 평준화시키거나, 향후 과세표준율의 유지를 통하여 조세를 회피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하에서 법인세를 평준화시켰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기업들이 아무런 세무회계상의 오류 및 기업회계기준 위반행위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현금유출을 부담하려고 한다는 것은 일응 경제적 합리인의 가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오류가 없는 경우에 세무조사 자체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만으로 인하여 그 이익 등을 조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이후에는 재무제표사기에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과세표준율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무회계상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재무보고상에도 이익조작 등이 수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 세무조사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의 차이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감독기관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크다는 점 및 과세표준율 (과세소득/수입금액)이 일정기간에 걸쳐서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과 동 사유로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첫째, 법인세의 소득조정은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과세소득에 이르는 과정이 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이루어지므로 과세관청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차이의 원인까지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분석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다. 상장법인 등의 경우 사업보고서상 법인세등명세서를 공시하므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사이의 총액을 알 수는 있으나, 그 상세한 명세를 알 수 없고 위 법인세등명세서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지 않으며 그 공시가 요구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둘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 또는 수색영장에 의하여 증빙을 취집할 수 있고(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 내지 제6조 참조), 동법 제7조의2에 의하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국가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금융감독기관의 경우에는 2002. 12. 개정된 증권거래법상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서만 강제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을 뿐 재무제표사기 일반에 관하여서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0조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은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조사가 위탁된 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재산의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강제적으로 자료를 취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3. 조세적 고려를 이용한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전략

위와 같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큰 경우 및 과세표준율(과세소득/수입금액)이 일정 기간에 걸쳐서 고정되어 있는 경우는 재무제표사기에 대한 유력한 징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경우 세무관서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이를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조사의 개시사유로 삼을 경우 재무제표사기에 대한 적발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제거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큰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면하게 하여야 할 것이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무제표사기에 대한 판단은 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GAAP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의2에 근거하여 위 세무조사 개시후 그 조사과정에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이 과세관청과 동시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회사들이 이상의 전략을 피하기 위하여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특정 시점 또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줄이면서도 과세표준율이 일정하지 않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즉시적이고도 추가적 현금유출 등의 부담이 초래되기 때문에 역시 재무제표사기에 대한 억지책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적 고려를 감안한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전략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한 회계기간 또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큰 경우 또는 과세표준율(과세소득/수입금액)이 일정한 경우에는 세무관서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이를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조사의 개시사유로 하며 회사들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그 조사과정은 진행되고 그 조사과정에 금융감독원이 관여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V. 결 론

재무제표사기는 Cooks, Recipes, Incentives, Monitoring 및 End results라는 5가지의 상호 작용하는 요소들에 의하여 분석될 수 있고, 재무제표사기의 발생은 심리적 변수인 동기(Incentives), 기회(Opportunity) 및 합리화(Rationalization)들에 의하여 설명되고, 위 심리적 변수들은 다시 Conditions, Corporate Structure 및 Choice변수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전략들 중 Fraud Vulnerability Reviews는 주로 Condition을 개선하는 점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보이며, Gamesmanship Review는 최고경영진의 위

Choice와 관련한 요소를 감시하겠다는 취지의 전략이며, Fraud Prevention Program은 위 Corporate Structure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일 것이다. 또한 Enforcement Procedures는 재무제표사기에 대한 회사 내부 및 외부에서의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즉 위 End results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조세적 고려를 이용한 방안은 그 적발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각 재무제표사기 발생모델 중 주로 심리적 변수들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재무제표사기를 예방하자는 전략일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각 전략들과 위 발생모델의 변수들 사이의 연관관계는 조사 또는 연구대상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같은 전략이라도 서로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확정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위 각 전략에 따라서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방안들을 분류하여 보았다. 위와 같이 심리적 변수들이 매개변수로서 포함된 재무제표사기의 발생모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위 모델상의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세워서 각 변수를 측정된 후에 경로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위 모델을 검증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위 모델의 적합도가 신뢰할 만한 수준이면 각 경로계수가 조사대상 집단의 고유한 발생모델을 설명할 수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여러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을 경우 각 대안이 제시될 경우의 위 모델상의 경로계수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통하여 각 방안의 효과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외국의 법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도 그 법제가 위 발생모델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그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본다. 본고에서 제시하여 본 조세적 고려를 이용한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방안에 관하여서도 실증적 분석 등을 통하여 그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면 이를 입법사항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권수영·김문철·손성규·최관·한봉희, 『자본시장에서의 회계정보유용성』, 신영사, 2003.
- 김광윤, “회계학자가 본 분석회계,” 『비즈니스광장』, 제17호,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2001.
- 김광윤, “회계투명성제고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세무적 고려 포함,” 『세무학연구』, 제18권 제3호, 2002.
- 김정수, 『현대증권법원론』, 박영사, 2002.
- 박종일·김경호, “세금비용과 이익조정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7권 제2호, 2002.
- 박춘래·김성민, “법인세율인하와 이익관리,” 『회계학연구』, 제21권, 1996.
- 오항록, “상장기업의 법인세유연화에 대한 실증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윤종규, “중소제조업의 이익 및 조세감면 조정을 통한 법인세평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윤종규·최신재, “중소제조업의 조세감면조정을 통한 법인세유연화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8권 제1호, 2001.
- 윤종규·최신재, “중소제조업의 법인세평준화를 위한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8권 제3호, 2002.

전춘옥·조현연·백승산, “법인세 유연화 연구,” 『세무학연구』, 제11호, 1996. 1.

정규언, “법인세 유연화에 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16호, 1993.

정규언, “법인세법의 구조적인 영향을 고려한 법인세 평준화 연구,” 『세무학연구』, 제9호, 1997. 2.

Bonner, S.E., Z. Palmrose, and S.M. Young. “Fraud Type and Auditor Litigation: An Analysis of SEC Accounting and Auditing Enforcement Releases,” *The Accounting Review*, Vol. 73, No. 4, October 1999.

Cloyd, B., J. Pratt, and T. Stock, “The Use of Financial Accounting Choice to Support Aggressive Tax Positions: Public and Private Firm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4, No. 1, 1996.

Daboub, A.J., A.M.A. Rasheed, R.L. Priem, and D.A. Gray, “Top Management Team Characteristics and Corporate Illegal Activ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0, No. 1, 1995.

Mills, L. and R. Sansing, “Strategic Tax and Financial Reporting Decisions: Theory and Evidence,”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 17, No. 1, spring 2000.

Rezaee, Zabihollah, *Financial Statement fraud*, John Wiley & Sons, Inc., 2002.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5, No. 1, 2004

A Study on the Occurrence, Prevention and Detection
of Financial Statement Fraud
— including Psychological Variables and Tax Considerations

Jun Bong Lee

Abstract

Financial statement frauds can be analyzed by the right combination of five interactive factors: ?ooks? ?ecipes? ?ncentives? ?onitoring?and ?nd Results? This five interactive factors?abbreviation is ?RIME?

Financial statement fraud can be inversely influenced by the variables of ?ncentives? ?pportunities?and ?ationalization? And this variables can be explained by the variables of ?onditions? ?orporate Structure?and ?hoice?

The strategies of the prevention and detection of financial statement fraud are as

follows: fraud vulnerability reviews, gamesmanship review, fraud prevention program and enforcement procedures. Various anti-fraud policies can be categorized into the above strategies.

This paper introduces a new anti-fraud policy based upon empirical tax researches about the gap between accounting income and taxable income and the smoothing of the corporation tax?

1) "... purposeful intervention in the external financial reporting process, with the intent of obtaining some private gain(as opposed to, say, merely facilitating the neutral operation of the process"; Schipper, K. "Commentary on Earnings Management," Accounting Horizons 3(December 1989) pp. 91-102; 권수영·김문철·손성규·최관·한봉희, 『자본시장에서의 회계정보유용성』 (신영사, 2003), 373면 재인용.

2) "Earnings management occurs when managers use judgement in financial reporting and in structuring transactions to alter financial reports to either mislead some stakeholders about the underlying economic performance of the company or to influence contractual outcomes that depends on reported accounting numbers"; Healy, P. and J. Walen, "A Review of the Earnings Management Literature and its Implications for Standard Setting," Accounting Horizon 13(December 1999), pp.365-384; 권수영 외, 상계서, 374면 재인용.

3) Zabihollah Rezaee, Financial Statement fraud, John Wiley & Sons, Inc., 2002, p. 44.

4) Ibid., pp. 46-61.

5) Bonner, S.E., Z. Palmrose, and S.M. Young, "Fraud Type and Auditor Litigation: An Analysis of SEC Accounting and Auditing Enforcement Releases," The Accounting Review(Vol. 73, No. 4, October 1999), pp. 503-532.

6) Robertson, J.C, Fraud Examination for Managers and Auditors, Austin, TX: Viesca Books, 2000; Zabihollah Rezaee, op. cit., p. 56에서 재인용.

7) Ibid., p. 56.

8) Ibid., p. 58.

9) Ibid., p. 60.

10) Ibid., p. 61.

11) Ibid., pp. 70-72.

12) 위 SAS 99의 outline은 아래와 같다. 출처는

<http://www.micromash.net/CPE/description/cfsa.htm>

Description and Characteristics of Fraud

- Introduction to Fraud
- Introduction To SAS 99
- Types of Material Misstatements
- Fraud Risk Factors

Fraud Risk Factors: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 Pressures and/or Incentives Risk Factors

- Opportunity Risk Factors
 - Attitude or Rationalization Risk Factors
- Fraud Risk Factors: Misappropriation of Assets
- Overview
 - Pressure or Incentive Risk Factors
 - Opportunity Risk Factors
 - Attitude or Rationalization and Other Risk Factors
- Audit Team Discussions, Obtaining Information, and Identifying and Assessing Risks
- Discussion Among Engagement Personnel Regarding the Risks of Material Misstatement Due to Fraud
- Misstatement Due to Fraud
- Obtaining Information to Identify Fraud Risks: Making Inquiries and Other Information
 - Obtaining Information to Identify Fraud Risks: Analytical Procedures
 - Identifying and Assessing Risks
- Responding to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
- Overall Responses to Identified Risks
 - Responses: Nature, Timing, and Extent of Audit Procedures
 - Responses: Misappropriation of Assets and Fraudulent Financial Statement Fraud Risks
 - Inventory Fraud and Responses to Inventory Fraud Risk
- Revenue Recognition Fraud
- Booking Fictitious Revenues
 - Cutoff Frauds
 - Bill-and-Hold Schemes
- Disclosure Failures, Concealed Liabilities and Losses, Management Override of Controls, and Management Estimates
- Disclosure Failures and Concealed Liabilities and Losses
 - Responses to Management Override of Controls Risk
 - Management Estimates
- Evaluating Audit Tests, Communicating Results, Documenting Audit Work, and Studying Fraud Schemes
- Evaluating Audit Test Results
 - Communicating Fraud Findings and Documenting the Auditor's Consideration of Fraud
 - To Understand Fraud, Study Fraud Schemes
 - Avoiding Legal Liability During Audits
- 13) Zabihollah Rezaee, *op. cit.*, p. 69.
- 14) *Ibid.*, p. 61, p. 81.
- 15) *Ibid.*, p. 65.
- 16) 김광윤, “회계학자가 본 분식회계,” 『비즈니스광장』, 제17호,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2001. 9. 1; *Ibid.*, pp. 104-110.

- 17) Ibid., p. 98.
- 18) 박종일·김경호, “세금비용과 이익조정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7권 제2호(2002. 6), 82-83면.
- 19) Cloyd, B., J. Pratt, and T. Stock, “The Use of Financial Accounting Choice to Support Aggressive Tax Positions: Public and Private Firm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4(1996), pp. 23-43.
- 20) Mills, L. and R. Sansing, “Strategic Tax and Financial Reporting Decisions: Theory and Evidence,”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7(2000), pp. 83-96.
- 21) 박종일·김경호, 전계논문, 81-112면.
- 22) 전춘옥·조현연·백승산, “법인세 유연화 연구,” 『세무학연구』, 제11호(1996), 63-95면.
- 23) 정규언, “법인세 유연화에 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16호(1993), 339-356면.
- 24) 윤종규, “중소제조업의 이익 및 조세감면 조정을 통한 법인세평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25) 오항록, “상장기업의 법인세유연화에 대한 실증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117-118면.
- 26) 정규언, “법인세법의 구조적인 영향을 고려한 법인세 평준화 연구,” 『세무학연구』, 제9호(1997), 25-28면.
- 27) 윤종규·최신재, “중소제조업의 조세감면조정을 통한 법인세유연화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호(2001), 167-194면.
- 28) 윤종규·최신재, “중소제조업의 법인세평준화를 위한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3호(2002), 139-168면.
- 29) 박춘래·김성민, “법인세율인하와 이익관리,” 『회계학연구』, 제21권(1996), 143-176면.
- 30) 권수영 외, 전계서, 391면.